|  |  |  |
| --- | --- | --- |
|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4년 버전)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4]5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투자체제 개혁 및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정부 조직을 간소화 및 권한 이양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의 투자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주체 지위를 확립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거시적 통제를 강화∙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4년 버전) 》을 공포하는 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본 목록에 열거된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를 투자∙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투자∙건설 프로젝트는 신고(备案)제를 시행한다.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이 투자∙건설하는 프로젝트도 본 목록을 적용 받는다.   원유 개발 프로젝트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개발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되 국무원 업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발권 보유 기업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개발·사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무질서한 자원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가 제정한 발전계획, 산업정책, 총량통제목표, 기술정책, 진입조건, 부지사용정책, 환경보호정책, 신용∙대출정책은 프로젝트 초기단계 기업 업무 추진의 중요한 근거이자, 프로젝트 허가기관 및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시∙농촌계획, 업종관리 등 정부기관과 금융기구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근거이다. 한경보호부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프로젝트를 급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审批)을 엄격히 하며, 프로젝트 진행단계 및 사후단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3)41호)의 요구에 따라 철강·전해 알루미늄·시멘트·판 유리·선박 등 생산과잉 업종 프로젝트의 신규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한다. 각 지방정부와 각 부서는 그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도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의 신고 절차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관련 부서와 기구는 토지(해만) 공급 · 에너지효율 평가 · 환경영향 평가 · 신용공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두가 합력하여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3. 프로젝트 허가기관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확실하게 증진시킴과 더불어 허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심사함에 있어 규정된 권한, 절차 및 기간 등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권한의 하급기관 이양과 동시에 감독관리의 중심도 하급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감독·관리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관련 부서들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에 의거하여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허가 및 신고에 있어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주관부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기구 또한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에 신고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신고한다. 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와 국무원 투자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사전에 반드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각 급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구분 및 확정할 수 있다. 단,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그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지 못한다. 5.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전문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국가에서 별도의 전문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그 전문규정에 따른다. 상무주관부서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변경 프로젝트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급융기업 제외) 설립 프로젝트의 심사·허가 업무 또는 신고 업무를 주관한다. 6. 본 목록은 공포일 부터 시행하며,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3년 버전)》은 즉시 폐지한다.   　　　　　　　　　　　　　　　　　　　　　　　　　 국무원  　　　　　　　　　　　　　　　　　　　　　　2014년 10월 31일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4년 버전)**  **1. 농업수리**  농업: 황무지 개간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저수지: 국제하류(두개 이상의 국가를 걸친 강)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하류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저수량이 10억M3 이상(10억M3 포함)이거나 1만명 이상(1만명 포함)의 주민 이주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기타 수리공사: 국제하류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수자원 배치조정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2. 에너지**  수력발전소: 국제하류(두개 이상의 국가를 걸친 강)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하류위에 건설하는 1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이 50만kW 이상(50만kW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1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이 300만kW 이상(300만kW 포함)이거나 1만명 이상(1만명 포함)의 주민 이주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양수발전소: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화력발전소: 성급 정부에서 허가하되, 석탄연소 발전소 프로젝트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열발전소: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추기복수형 석탄연소 열발전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풍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 및 연간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원자력 발전소: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송전망공사: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500KV 이상(±5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500KV, 750KV,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800KV 이상(±8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하되, ±800KV 이상(±8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석탄광: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의 연간생산능력 120만톤 이상(120만톤 포함)의 신규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연간생산능력 500만톤 이상(500만톤 포함)의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의 기타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일반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국가에서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석탄⬝가스 돌출 석탄광, 가스함량도가 높은 석탄광 및 중소형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  석탄가공연료: 연간 생산량이 20억M3를 초과하는 합성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을 초과하는 석탄액화연료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LPG 접수 및 저장시설 (유전⬝가스전 및 정유소의 보조시설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음) :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수입LNG 접수 및 저장⬝운송시설: 신설(타지역 증설 포함)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저장·운송 능력 300만톤 이상(300만톤 포함)의 신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송유관 (유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경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가스수송관 (유전⬝가스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제(국경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정유: 정유시설 신설 프로젝트 및 일차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에너지발전계획,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포함된 증설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변성연료 에탄올: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3. 교통운수**  신규건설(증설 포함) 철도: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프로젝트 및 국가 철도망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기타 국가철도망 프로젝트는 중국철도총공사가 자체로 결정하되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야 한다. 그 외의 지방 철도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도로: 국가 고속도로망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일반 국도망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지방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계획에 따라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독립 도로(철도) 교량, 터널: 국경, 10만톤급 이상(10만톤급 포함)의 항로·해만, 큰 강과 하천(1급 이상의 항로구간에 속하거나 1급 이상의 항로구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을 걸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제(국경을 걸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국가철도망 프로젝트는 중국철도총공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되,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석탄·광석·석유·가스 전용 정박장: 연해지역(장강 남경 및 그 이하 지역 포함)에 신규건설하는 연 수용능력이 1,000만톤 이상(1,000만톤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 연해지역(장강 남경 및 그 이하 지역 포함)에 신규건설하는 연 수용능력이 100만 표준 컨테이너 이상(100만 표준 컨테이너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국내 수상 운수: 성(구, 시)를 걸친 고등급 통항로의 천톤급 이상(천톤급 포함) 운항·발전 중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민간항공: 운송용 공항 신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일반공항(General Aviation Airport) 신설 프로젝트 및 군민 겸용 공항 증설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4. 정보산업**  통신: 국제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내 간선 송신망(라디오⬝TV방송 송신망 포함) 및 정보안전과 관련된 기타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5. 원자재**  희토, 철광, 유색광물 개발: 희토광 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석유화학: 신규 건설하는 에틸렌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따라 허가한다.  화학공업: 연간 생산량 50만톤을 초과하는 DMTO(석탄에서 메탄올을 거쳐 올레핀을 생산) 프로젝트와 연간 생산량 100만톤을 초과하는 Coal to methanol(석탄에서 메탄올 생산)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신규 건설하는 PX 프로젝트와 MDI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따라 허가한다.  희토: 제련 분리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희토 심가공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황금: 채광, 선광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6. 기계제조**  자동차: 국무원이 승인한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7. 경공업**  연초: 권연(卷烟), 담배용 이초산섬유소 및 토우(tow)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8. 첨단기술**  민용항공⬝우주비행: 간선·지선항공기 제조 프로젝트, 6톤/9좌석 이상(6톤/9좌석 포함)의 일반 항공기 및 3톤 이상(3톤 포함)의 헬리곱터 제조 프로젝트, 민용 위성 제조 프로젝트, 민용 원격탐지위성 지상국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6톤/9좌석 이하의 일반 항공기 제조 프로젝트와 3톤 이하의 헬리곱터 제조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9. 도시건설**  도시고속궤도교통 프로젝트: 성급 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도시 도로교량⬝터널: 10만톤급 이상(10만톤급 포함)의 항로·해만, 큰 강과 하천(1급 이상의 항로구간에 속하거나 1급 이상의 항로구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기타 도시건설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시행한다.  **10. 사회사업**  테마파크: 특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며, 중소형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관광: 국가급 풍경 명승지, 국가자연보호구, 전국 중점문물보호구역 내 총투자 5,000만 위안 이상(5,000만 위안 포함)의 관광개발과 자원보호 프로젝트,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총투자 3,000만 위안 이상(3,000만 위안 포함)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기타 사회사업 프로젝트: 국무원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신고제로 변경된 프로젝트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그 종속관계 별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허가제 또는 신고제 시행을 확정한다.  **11. 외국인투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중국측 대주주(상대적 대주주 포함)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총투자(증자 포함) 10억불 이상(10억불 포함)의 권장류 프로젝트, 총투자(증자 포함) 1억불 이상(1억불 포함)의 제한류 프로젝트(부동산 제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총투자(증자 포함)가 20억불 이상(20억불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류 프로젝트 중 부동산 프로젝트 및 총투자(증자 포함)가 1억불 미만인 기타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중국측 대주주(상대적 대주주 포함)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총투자(증자 포함)가 10억불 미만인 권장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이외의 본 목록 제1조~제10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본 목록 제1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  **12. 해외투자**  민감한 국가⬝지역 또는 민감한 산업에 연관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중앙관리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지방기업이 투자하는 3억불 이상(3억불 포함) 투자규모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的通知**  国发〔2014〕53 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进一步深化投资体制改革和行政审批制度改革，加大简政放权力度，切实转变政府投资管理职能，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确立企业投资主体地位，更好发挥政府作用，加强和改进宏观调控，现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并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企业投资建设本目录内的固定资产投资项目，须按照规定报送有关项目核准机关核准。企业投资建设本目录外的项目，实行备案管理。事业单位、社会团体等投资建设的项目，按照本目录执行。  　　原油、天然气开发项目由具有开采权的企业自行决定，并报国务院行业管理部门备案。具有开采权的相关企业应依据相关法律法规，坚持统筹规划，合理开发利用资源，避免资源无序开采。  　　二、法律、行政法规和国家制定的发展规划、产业政策、总量控制目标、技术政策、准入标准、用地政策、环保政策、信贷政策等是企业开展项目前期工作的重要依据，是项目核准机关和国土资源、环境保护、城乡规划、行业管理等部门以及金融机构对项目进行审查的依据。环境保护部门应根据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实行分级分类管理，对环境影响大、环境风险高的项目严格环评审批，并强化事中事后监管。  　　三、对于钢铁、电解铝、水泥、平板玻璃、船舶等产能严重过剩行业的项目，要严格执行《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国发〔2013〕41号），各地方、各部门不得以其他任何名义、任何方式备案新增产能项目，各相关部门和机构不得办理土地（海域）供应、能评、环评审批和新增授信支持等相关业务，并合力推进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各项工作。  　　四、项目核准机关要改进完善管理办法，切实提高行政效能，认真履行核准职责，严格按照规定权限、程序和时限等要求进行审查。监管重心要与核准、备案权限同步下移，地方政府要切实履行监管职责。有关部门要密切配合，按照职责分工，相应改进管理办法，依法加强对投资活动的监管。对不符合法律法规规定以及未按规定权限和程序核准或者备案的项目，有关部门不得办理相关手续，金融机构不得提供信贷支持。  　　五、按照规定由国务院核准的项目，由发展改革委审核后报国务院核准。按照规定报国务院备案的项目，由发展改革委核准后报国务院备案。核报国务院核准的项目、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的项目，事前须征求国务院行业管理部门的意见。由地方政府核准的项目，省级政府可以根据本地实际情况具体划分地方各级政府的核准权限。由省级政府核准的项目，核准权限不得下放。  　　六、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专门规定的，按照有关规定执行。商务主管部门按国家有关规定对外商投资企业的设立和变更、国内企业在境外投资开办企业（金融企业除外）进行审核或备案管理。  　　七、本目录自发布之日起执行，《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即行废止。  　　　　　　　　　　　　　　　　　 　 国务院  　　　　　　　　　2014年10月31日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  **（2014年本）**  一、农业水利  　　农业：涉及开荒的项目由省级政府核准。  　　水库：在跨界河流、跨省（区、市）河流上建设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库容10亿立方米及以上或者涉及移民1万人及以上的项目由国务院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其他水事工程：涉及跨界河流、跨省（区、市）水资源配置调整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二、能源  　　水电站：在跨界河流、跨省（区、市）河流上建设的单站总装机容量50万千瓦及以上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单站总装机容量300万千瓦及以上或者涉及移民1万人及以上的项目由国务院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抽水蓄能电站：由省级政府核准。  　　火电站：由省级政府核准，其中燃煤火电项目应在国家依据总量控制制定的建设规划内核准。  　　热电站：由地方政府核准，其中抽凝式燃煤热电项目由省级政府在国家依据总量控制制定的建设规划内核准。  　　风电站：由地方政府在国家依据总量控制制定的建设规划及年度开发指导规模内核准。  　　核电站：由国务院核准。  　　电网工程：跨境、跨省（区、市）±500千伏及以上直流项目，跨境、跨省（区、市）500千伏、750千伏、1000千伏交流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800千伏及以上直流项目和1000千伏交流项目报国务院备案；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其中±800千伏及以上直流项目和1000千伏交流项目应按照国家制定的规划核准。  　　煤矿：国家规划矿区内新增年生产能力120万吨及以上煤炭开发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其中新增年生产能力500万吨及以上的项目报国务院备案，国家规划矿区内的其余煤炭开发项目由省级政府核准；其余一般煤炭开发项目由地方政府核准。国家规定禁止新建的煤与瓦斯突出、高瓦斯和中小型煤炭开发项目，不得核准。  　　煤制燃料：年产超过20亿立方米的煤制天然气项目，年产超过100万吨的煤制油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液化石油气接收、存储设施（不含油气田、炼油厂的配套项目）：由省级政府核准。  　　进口液化天然气接收、储运设施：新建（含异地扩建）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其中新建接收储运能力300万吨及以上的项目报国务院备案。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输油管网（不含油田集输管网）：跨境、跨省（区、市）干线管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跨境项目报国务院备案。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输气管网（不含油气田集输管网）：跨境、跨省（区、市）干线管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跨境项目报国务院备案。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炼油：新建炼油及扩建一次炼油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列入国务院批准的国家能源发展规划、石化产业规划布局方案的扩建项目由省级政府核准。  　　变性燃料乙醇：由省级政府核准。  　　三、交通运输  　　新建（含增建）铁路：跨省（区、市）项目和国家铁路网中的干线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国家铁路网中的其余项目由中国铁路总公司自行决定并报国务院投资主管部门备案；其余地方铁路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家批准的规划核准。  　　公路：国家高速公路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普通国道网项目由省级政府核准；地方高速公路项目由省级政府按照规划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独立公（铁）路桥梁、隧道：跨境、跨10万吨级及以上航道海域、跨大江大河（现状或规划为一级及以上通航段）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跨境项目报国务院备案；国家铁路网中的其余项目由中国铁路总公司自行决定并报国务院投资主管部门备案；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煤炭、矿石、油气专用泊位：在沿海（含长江南京及以下）新建年吞吐能力1000万吨及以上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集装箱专用码头：在沿海（含长江南京及以下）建设的年吞吐能力100万标准箱及以上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内河航运：跨省（区、市）高等级航道的千吨级及以上航电枢纽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民航：新建运输机场项目由国务院核准，新建通用机场项目、扩建军民合用机场项目由省级政府核准。  　　四、信息产业  　　电信：国际通信基础设施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国内干线传输网（含广播电视网）以及其他涉及信息安全的电信基础设施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五、原材料  　　稀土、铁矿、有色矿山开发：稀土矿山开发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石化：新建乙烯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务院批准的石化产业规划布局方案核准。  　　化工：年产超过50万吨的煤经甲醇制烯烃项目、年产超过100万吨的煤制甲醇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新建对二甲苯（PX）项目、新建二苯基甲烷二异氰酸酯（MDI）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务院批准的石化产业规划布局方案核准。  　　稀土：冶炼分离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稀土深加工项目由省级政府核准。  　　黄金：采选矿项目由省级政府核准。  　　六、机械制造  　　汽车：按照国务院批准的《汽车产业发展政策》执行。  　　七、轻工  　　烟草：卷烟、烟用二醋酸纤维素及丝束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八、高新技术  　　民用航空航天：干线支线飞机、6吨/9座及以上通用飞机和3吨及以上直升机制造、民用卫星制造、民用遥感卫星地面站建设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6吨/9座以下通用飞机和3吨以下直升机制造项目由省级政府核准。  　　九、城建  　　城市快速轨道交通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家批准的规划核准。  　　城市道路桥梁、隧道：跨10万吨级及以上航道海域、跨大江大河（现状或规划为一级及以上通航段）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其他城建项目：由地方政府自行确定实行核准或者备案。  　　十、社会事业  　　主题公园：特大型项目由国务院核准，大型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中小型项目由省级政府核准。  　　旅游：国家级风景名胜区、国家自然保护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区域内总投资5000万元及以上旅游开发和资源保护项目，世界自然和文化遗产保护区内总投资3000万元及以上项目，由省级政府核准。  　　其他社会事业项目：除国务院已明确改为备案管理的项目外，按照隶属关系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地方政府自行确定实行核准或者备案。  　　十一、外商投资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有中方控股（含相对控股）要求的总投资（含增资）10亿美元及以上鼓励类项目，总投资（含增资）1亿美元及以上限制类（不含房地产）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中总投资（含增资）20亿美元及以上项目报国务院备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限制类中的房地产项目和总投资（含增资）小于1亿美元的其他限制类项目，由省级政府核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有中方控股（含相对控股）要求的总投资（含增资）小于10亿美元的鼓励类项目，由地方政府核准。  　　前款规定之外的属于本目录第一至十条所列项目，按照本目录第一至十条的规定核准。  　　十二、境外投资  　　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前款规定之外的中央管理企业投资项目和地方企业投资3亿美元及以上项目报国务院投资主管部门备案。 |